

규정/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항목:	ACG-RB, COA-RB, IGO-RA, IJA, IJA-RA, IKC-RA, IOE-RA, IOI-RA, JEA-RA, JEE-RA, JHC, JHC-R
책임 부서:	Office of the Chief Academic Officer;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자택 및 병원에서의 교습 Home and Hospital Teaching

I. 목적

이 규정은 Maryland 법에 규정된 대로 적격한 신체 또는 정서적 건강 상태로 인하여 MCPS 학교에 출석할 수 없는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의 자택 및 병원에서의 교습(Home and Hospital Teaching-HHT)을 관리하는 절차를 설정합니다.

II. 배경

HHT 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건강 상태로 인해 재학 중인 학교에 다닐 수 없는 학생들에게 핵심 과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단기 서비스입니다.

MCPS 는 적격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건강 상태와 학생이 HHT 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상태의 정도에 따라 학생이 받게 될 HHT 서비스를 결정합니다.

HHT 의 목표는 학생이 가능한 한 빨리 교육 프로그램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HHT 는 일반적으로 적격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건강 상태에 대한 치료 목표로 인해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의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에게 제공됩니다. HHT 는 다음이 아닙니다 –

- A. 교육적 프로그램의 대안
- B. 학생의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대체하도록 의도되거나 고안된 것; 그리고
- C. 비공립 특수교육 학교 배치를 기다리는 장애 학생을 위한 임시 배치와 배치 변경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HHT는 학생 치료 계획의 한 구성 요소로 간주될 수 있지만, 학생 학교의 초점은 학생이 학교에 가능한 한 빨리 재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복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III. 정의

A. *성인(Adult)*(HHT 목적)은 교습기간동안 학생을 책임질 수 있는 21 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B. 이 규정에서의 *자격증이 있는 의료 담당자(Authorized health provider)*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1. 해당하는 신체적 건강 상태의 학생을 관리할 자격증이 있는 의료 담당자 또는 인가받은 간호 담당자 또는,
2. 정서적 건강 문제가 있는 학생의 경우, 면허를 소지한 심리학자, 면허를 소지한 정신과 의사, 정신과 정신 건강 전문 간호사 또는 공인 학교 심리학자.

C. 교육적 의사결정의 목적에서의 *자격 학생(eligible student)*은 18 세, 18 세 이상 또는 독립한 학생입니다.

D. *HHT 케이스 매니저(Case manager)*는 HHT 서비스를 받는 학생을 위해 서비스를 조정하는 MCPS HHT 관리자/대리인입니다. 이는 학생의 학교 카운슬러 및 학생의 개별교육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IEP) 팀원과 적절하게 협력하여 각 학생에의 교육 서비스를 구현하고 모니터링합니다. 자격조건이 승인되면, HHT 관리자/대리인은 학생, 학부모/후견인/보호자와 학교 간의 기본 연락담당이 됩니다.

E. 이 규정의 목적에 따라, *학생의 학교*는 MCPS 규정 JEE-RA, *학생 전학 및 행정 배치(Student Transfers and Administrative Placements)*에 정의된 대로 학생의 홈학교 또는 배정 학교입니다.

IV. 행정절차

A. 자격조건

1. HHT는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MCPS 학생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a) 킨더가든부터 12 학년까지 등록되어 있거나 MCPS 가 비공립 학교에 배정한 경우,
- b) 최소 4 주 동안 예상되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건강 상태로 인해 학교에 다닐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생이 간헐적으로 학생의 학교에 결석해야 할 적격 상태의 경우.

2. HHT 를 시작하기 전, 완성한 MCPS Form 311-15B, *적격 신체 건강 상태에 따른 가정 및 병원에서의 교습 지원서(Application for Home and Hospital Teaching, with Qualified Physical Health Condition ONLY)* 또는 MCPS Form 311-15C, *적격 정신 건강 상태에 따른 가정 및 병원에서의 교습 지원서(Application for Home and Hospital Teaching, with Qualified Emotional Health Condition ONLY)*를 HHT 행정 담당자/지정인에게 접수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3. 고려해야 할 추가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 출산 후 양육 학생은 최소 6 주간의 HHT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및 양육 중인 학생이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타 절차는 MCPS 규정 IOE-RA, *임산부 및 양육 중인 학생의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지침(Guidelines for the Continuing Education of Pregnant and Parenting Students)*을 참조합니다.) 신체적 또는 정서적 건강 상태가 있는 임신 중이거나 양육 중인 학생에게는 다른 MCPS 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HHT 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b) 학생은 간헐적으로 학교를 결석해야 하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상태에 따라, HHT 와 교내 교육을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원이 필요한 학생이 다음과 같은 조건의 경우, HHT 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a) 학생은 HHT 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그리고
- b) HHT 가 자격조건에 맞는 학생의 치료 계획을 지원하며, 학생은 공인된 의료 제공자의 결정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경우.
- c) 학생이 Montgomery 카운티 외부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 MCPS HHT 관리자/대리인의 결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교사가 있을

경우 HHT 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의 경우, MCPS HHT 관리자/대리인의 승인에 따라 교습 서비스가 다른 지역 교육 기관을 통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B. 학부모/후견인/보호자/적격 학생의 책임

1. 학부모/후견인/보호자/자격 학생은 가능한 한 빨리 해당 학생의 학교에 장기간(예: 10 일 이상의 수업일)의 법적 공백이 예상됨을 알리고 해당 학생의 학교 카운슬러와 협력하여 학생이 결석으로 인해 놓친 학업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학생의 건강 상태가 4 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생이 HHT 를 신청하기 위해 4 주 동안 결석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으며 이를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학부모/후견인/보호자 또는 자격 학생은 가능한 한 빨리 HHT 를 요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 a) HHT 지원은 학생 학부모/후견인/보호자 또는 자격 학생과 학생의 의료 담당자는 다음을 해야 합니다-
 - (1) MCPS Form 311-15B 또는 MCPS Form 311-15C 양식을 작성합니다.
 - (2) 가능한 한 빨리 학생의 학교 카운슬러/지정인에게 양식을 제출합니다.
 - b) 학생의 학교 카운슬러/대리인은 양식을 HHT 관리자/대리인에게 전달합니다.
3. MCPS Form 311-15B 또는 MCPS Form 311-15C 에 서명하므로 학생 학부모/후견인/보호자 또는 자격 학생은 MCPS 의 학생 담당 승인된 의료 담당자와의 상담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4. 학생의 부모/후견인/보호자는 HHT 교사와 교습 스케줄과 적용교습 서비스를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 a) HHT 사무실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교습은 비대면 (virtually)로 제공받습니다.

- b) 책임을 맡은 성인이 HHT 교습 기간 동안에 학생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 c) HHT 관리자/대리인의 자유재량에 따라 다른 성인이 보고 있는 곳인 공공 도서관 또는 공공 건물에서의 교습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추가로 성인이 교습을 감독할 필요는 없습니다.

C. 학교 카운슬러의 책임

1. 학교는 적절한 학업 지원이 적시에 마련될 수 있도록, 학생의 학교 카운슬러/지정인에게 합법적인 장기 결석에 대해 즉시 통보하는 절차를 확립해야 합니다.
 - a) 4 주 미만의 결석일 경우, 학생의 학교 카운슬러/대리인은 학생, 학부모/후견인/보호자, 학생의 교사와 협력하여 놓친 학업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b) 신체적 또는 정서적 건강 문제로 인해 4 주 이상 결석이 예상되는 경우, 학교 상담사/지정인은 가능한 HHT 서비스의 적용에 관해 HHT office 와 상담합니다.
2. 학교 카운슬러는 다음과 같이 학부모/보호자/학생과 HHT 사례 관리자 간의 연락 지점입니다.
 - a) 가족은 학교 카운슬러에 MCPS Form 311-15B 또는 MCPS Form 311-15C 을 제출합니다.
 - b) HHT 케이스 매니저는 학교 정보 및 문제에 대해 학교 카운슬러와 상담하고 HHT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족을 안내합니다.
3. 학생의 학교 카운슬러 및/또는 학교 팀은 HHT 관리자/대리인이 적격 조건을 확인한 후 30 일 이내에 학부모/후견인/보호자 또는 자격 학생, 승인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협의하여 학교 복귀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 a) 학교 복귀 계획에는 학생의 학교 복귀를 가능한 한 빨리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학생의 학부모/후견인/보호자가 취할

구체적인 조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b) 학교 복귀 계획은 HHT 서비스의 필요성을 확인한 후 30 일 이내에 HHT 관리자/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개별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IEP)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 카운슬러/지정인은 학부모/후견인/보호자가 4 주 이상의 예상 결석 통지를 제공하는 즉시, IEP 케이스 관리자 또는 특수교육 자원 교사()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 a) IEP 팀은 학생의 결석 기간 동안 학생의 IEP 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결정하기 위해 예상 결석 통보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소집되어야 합니다.
 - b) 아래의 Section IV.F 를 참조하십시오.

D. 학생 학교의 책임

1. HHT 서비스를 받는 학생은 본인의 학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HHT 가 학생이 HHT 교사와 만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학교에 알리지 않는 한, HHT 로 인한 결석으로 표시됩니다.
3. 출석 지정은 학생이 MCPS 로부터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학교에 출석하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 보고 목적으로 출석으로 변환됩니다.
4. 동시 등록된 학생의 경우 학교와 HHT 모두 출석을 유지합니다.
5. HHT 교습은 MCPS 학사일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6. HHT 를 받는 학생의 스케줄과 IEP 회의는 학생 학교가 계속 담당합니다.
7. 학생 학교는 책과 필요한 교습 자료와 함께 필요한 경우, 대학 카운슬링 또는 과목 지침 등의 적절한 서비스를 HHT 를 받는 학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8. HHT는 학생이 HHT를 받는 동안의 동기식 및 비동기식 과제의 평가를 제공합니다. HHT 교사는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 성적평가 및 성적보고 정책, MCPS 규정과 지침에 따라 채점을 합니다.

수업 담당 교사는 HHT 과제를 사용하여 학생의 채점 기간 성적 및 관련 과정 학점을 결정합니다. 학과목 학점은 학생의 과정 기대치 및 필수 평가 수행 능력을 입증하는 증거에 따라 부여되어야 합니다

E. HHT 관리자/대리인의 책임

1. 학교 카운셀러로부터 HHT 신청서를 받은 후, HHT 관리자/대리인은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교육 방식을 설정하며 적절하게 HHT 교사를 배정하는 데 최대 10 일의 수업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HHT 관리자/대리인은 추천서 수령 및 확인 시 학생을 위한 지시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2. HHT 관리자/대리인은 신청 결과를 학부모/보호자/자격 학생과 학생의 학교 상담원에게 알립니다.
3. 신청이 승인되면 HHT 관리자/대리인은 학생의 학교 상담원에게 복학 계획서를 HHT에 제출해야 하는 시기도 알려줍니다.
4. HHT 관리자/대리인은 어떤 교습 서비스를 제공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5. 적절한 교육 방식은 가능한 한 빨리 시작되지만, 학생이 학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HHT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필요성이 확인된 후 수업일 기준으로 10 일 이내에 시작하게 됩니다.
6. HHT 서비스가 통지 및 확인으로부터 4 주를 연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격 조건이 확인되고 교습방식이 확립되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7. 일주일 교육시간은 학생의 필요와 HHT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8. HHT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부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매주 최소 3 시간의 HHT 교육을 받게 됩니다. HHT 승인을 받았으나 학교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은 매주 최소 6 시간의 HHT 교육을

받게 됩니다.

9. 장애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 기간은 IV.G. 섹션에 명시된 최소 요건과 HHT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의 능력에 따라 학생의 IEP 에 명시된 개별 학생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합니다.
10. 비상상황에서, Office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al Programs (OCIP)/대리인의 부교육감(associate superintendent)은 HHT 를 통해 학생을 위한 서비스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F. 출결석

1. HHT 를 받는 학생은 MCPS Regulation JEA-RA, *학생의 출결석(Student Attendance)*에 책정되어 있는 출결석 지침, 인정된 결석에 따라야 합니다.
 - a) 학부모/후견인/보호자/자격 학생은 만약 학생이 교습일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이를 HHT 지침에 따라 HHT 교사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 b) HHT 교사는 스케줄을 다시 잡고 학생의 인정된 결석에의 보충을 해야 합니다. 만약 수업을 보충하였을 경우, 학생 성적 보고양식에는 결석이 보고되지 않습니다.
 - c) 인정되지 않은 결석의 경우는 보충시간을 책정할 수 없습니다.
 - d) HHT 교사의 결석은 보충해야 합니다.
 - e) 인정되지 않은 결석이 계속될 경우, 교습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G.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s-IEP)을 보유한 학생

1. 학생이 IEP 가 있을 경우, 학생의 IEP 팀은 MCPS 에게 학생의 출석 불가(inability of the student to attend school)를 통보하고 다음을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팀을 소집해야 합니다;
 - a) 학생이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논의

- b) 그 학생이 해낼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
HHT 및 필요한 모든 조정 및/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교육 진행, HHT 의 목표를 파악하고 학생을 학교 기반 프로그램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 또는,
- c) 학생의 IEP 에 대한 검토와 HHT 가 학생이 교육적 진보를 이루기에 불충분한 경우, 배치 변경을 고려.

2. IPE 팀은 IEP 의 사본을 HHT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HHT 를 마치게 되고 학생이 학생 학교에 돌아가게 될 때, IEP 회의를 다시 개최해야 합니다.
4. IEP 가 있는 학생으로 해당하는 정서건강 상태에 따라 HHT 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HHT 에서 제공하는 교습 서비스는 연속적으로 60 달력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5. HHT 는 장애가 있는 학생이 다음을 기다리는 기간의 임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
 - a) 비공립학교인 특수교육 학교에 배치
 - b) 기타 배치 변경

H. 서비스에 대한 자격 유지

1. HHT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다음과 같이 학생의 적격 신체적 또는 정서적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 a) 적격 여부에 관한 첫 결정 후 60 달력일 그리고 매 60 달력일마다. 또는,
 - b) 그 전에 이루어질 경우, 학부모/후견인/보호자/자격 학생 또는 MCPS 가 요구하는 경우.
2. 교육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는 학생의 경우 서비스 자격을 매년 재확인해야 합니다.

I. HHT 교사

1. HHT 교사의 계약은 Montgomery County Education Association 과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 간의 협상한 계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는 자격을 갖춘 HHT 교사의 업데이트된 목록을 HHT 관리자/대리인에게 정기적으로 보냅니다. HHT 교사 후보는 HHT 관리자/대리인과 인터뷰를 하며 교직원을 위한 HHT 오리엔테이션에 교습 전에 참석해야 합니다.
3. HHT 교사는 어떤 경우에도 HHT 학생을 수송해서는 안 됩니다.
4. HHT 교사에게는 다음 보고 요건이 적용됩니다:
 - a) HHT 교사는 MCPS 규정 JHC-RA, *아동 학대 및 방치 보고 및 조사(Reporting and Investigating Child Abuse and Neglec)*에 명시된 대로 의심되거나 목격된 아동 학대 또는 방치를 아동 보호 서비스에 보고해야 합니다.
 - b) 학생의 약물 남용이 의심되거나 목격한 경우 학부모/보호자 및 HHT 관리자/지정인에게 적절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MCPS 규정 IGO-RA, *학생과 관련된 알코올, 대마초, 담배 및 기타 약물 남용 사건에 대한 지침(Guidelines for Incidents of Alcohol, Cannabis, Tobacco, and Other Drug Abuse Involving Students)* 참조)
 - c) 자살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즉시 MCPS 양식 335-54, *자살 위험 보고 양식*의 단계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의료적 응급상황은 911 에 연락 후 학생의 부모님/후견인/보호자와 HHT 관리자/대리인에게 연락합니다. 비의료관련 비상상황에서 HHT 교사는 MCPS Form 335-54 에 명시된 절차에 따릅니다.
5. MCPS Form 311-13, *교사의 격주 임시 교습 서비스 보고서(Teacher's Biweekly Report of Interim Instructional Services)*는 교습 서비스를 제공한 후, 교습 시간을 검증하기 위해 각 교습기간 후 성인 또는 학생(공공장소에서 만날 경우)이 서명을 해야 합니다.
6. HHT 교사는 HHT 관리자/대리인 및/또는 학생의 학교 카운슬러와

적절하게 협의하여 학생 정보의 기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V. 검토

HHT 적용에서 야기되는 부동의의 상황을 HHT 담당자/대리인이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결을 위해 OCIP 부교육감(associate superintendent)/대리인에게 위탁됩니다. OCIP 부교육감(associate superintendent)/대리인은 해결을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무소 및 관련 전문가와 협의합니다.

관련 자료: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Article, Section 7-301.1;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13A.03.05.01-.05; and §13A.05.01.10.C(5)

규정 변경사: 새 규정: 1990년 5월 10일 갱신, 1995년 7월 1일 갱신, 2006년 9월 21일 갱신, 2009년 11월 6일 갱신, 2011년 7월 18일, 갱신 2016년 6월 28일, 실질적 변경 2016년 12월 13일, 2018년 6월 13일 갱신, 2024년 1월 26일 갱신, 2024년 9월 4일 COMAR 13A.03.05.04 에 따른 기술적 갱신 2025년 3월 11일.

MCPS 차별 금지 성명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인종, 민족, 피부색, 혈통, 출신국, 국적, 종교, 이민 상태, 성,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성 지향, 가족 형태/부모 상태, 결혼 상태, 나이, 능력 상태(인지, 사회/정서, 신체), 빈곤, 사회경제적 상태, 언어, 또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향 또는 소속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모두를 위한 평등, 포용, 수용을 만들고 육성하고 촉진하려는 우리 공동체의 오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교육위원회는 혐오를 조장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 운영 또는 활동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언어의 사용 및/또는 이미지와 기호, 상징의 표시를 금지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 차별 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봅시다. 이 정책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며 특히, 개인의 실제 또는 여겨지는 인적 특성으로 교육적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위원회의 신념을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공평성이 암묵적 편향, 부당한 이질적 영향을 미치는 관행, 정당화되지 않은 다른 관행, 교육과 고용의 기회의 평등을 방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MCPS는 또한,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와 다른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동등한 접근권을 제공합니다.*

A. 다음은 모든 공공 및 공공 자금 지원 학교와 학교 프로그램이 이를 준수하여 운영하는 Maryland주 정책입니다.

- (1) (1) 1964년 연방민권법 제6호(Title VI of the federal Civil Rights Act of 1964); 및
- (2) Title 26, Subtitle 7 of the Education Article of the Maryland Code에는 공공 및 공공 자금을 지원받는 학교와 프로그램은 다음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a)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출신국, 혼인 상태, 성적 지향, 성적정체성 또는 장애에 근거한 재학생, 예비 학생 또는 재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차별
 - (b) 개인의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 연령, 출신국, 결혼 상태, 성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장애로 예비 학생의 등록 거부, 재학생의 퇴학, 재학생, 예비 학생 또는 재학생 또는 예비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특권 박탈; 또는
 - (c) 불만의 결과에 관계없이 프로그램 또는 학교가 학생을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징계, 처벌을 발동하거나 기타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

연락처 정보와 연방, 주 또는 지방 관련 요건은 버전마다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본 문서에 포함된 진술과 참고자료보다 우선됩니다.

최신 정보는 온라인 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www.montgomeryschoolsmd.org

MCPS 학생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MCPS 교직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Director of Student Compliance and Appeals Division of Equity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850 Hungerford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SWC@mcpsmd.org	Human Resource Compliance Officer Division of Human Resources and Talent Manage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15 West Gude Drive, Suite B4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1973년 504 장애법(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학생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교직원
Section 504 Coordinator Division of Specialized Support Services, School Counseling Services Unit 850 Hungerford Drive, Room 257, Rockville, MD 20850 240-987-8031 504@mcpsmd.org	ADA Compliance Coordinator Division of Human Resources and Talent Manage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15 West Gude Drive, Suite B4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학생 또는 교직원***에의 성희롱 등, Title IX에 해당하는 성차별에 관한 조사나 불평사항	
Title IX Coordinator Division of Equity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Student Compliance and Appeals 850 Hungerford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TitleIX@mcpsmd.org	

* 본 통지는 개정된 연방 초등 및 중고등 교육법을 준수합니다.

** 본 통지는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Section 13A.01.07.을 준수합니다.

*** 차별에 관련된 민원은 다음과 같이 다른 기관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Baltimore Field Office, GH Fallon Federal Building, 31 Hopkins Plaza, Suite 1432, Baltimore, MD 21201, 1-800-669-4000, 1-800-669-6820 (TTY); Maryland Commission on Civil Rights(MCCR), William Donald Schaefer Tower, 6 Saint Paul Street, Suite 900, Baltimore, MD 21202, 410-767-8600, 1-800-637-6247, mccr@maryland.gov; Agency Equity Officer, Office of Equity Assurance and Compliance, Office of the Deputy State Superintendent of Operations,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0 West Baltimore Street, Baltimore, MD 21201-2595, oeac.msde@maryland.gov; 또는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OCR), 61 Forsyth St. S.W., Suite 19T10, Atlanta, GA 30303, 404-974-9406 and TDD: 800-877-8339, OCR.Atlanta@ed.gov, 1-800-421-3481, 1-800-877-8339(TDD), OCR.ed.gov, 또는 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안내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와 미국 장애인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대체 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 Office of Communications, 전화번호 240-740-2837, 1-800-735-2258(Maryland Relay) 또는, PIO@mcpsmd.org로 연락하여 요청합니다. 수화 통역 및 기타 특수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MCPS의 Office of Interpreting Services, 240-740-1800, 301-637-2958(VP)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로 연락합니다.